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11. 제천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3.
- 다. 상 정 일 자 : 2008. 6. 19.(제147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 가. 제안사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되고 충청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이 시달(총무과-4874. 2008.4.8)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장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위한 별표 변경적용(안 제3조제1항)
  -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별표 1 제1호 라목으로 개정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마련(안 제4조 신설)
  -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 1호 신설)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장관 명칭 변경(안 제5조 3호 및 7호)
  - 제17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3항, 제4항, 제29조제1항이 2008. 2. 29.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안(표준안)이 충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제3조1항은 시장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위한 별표 변경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 신설된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철도요금은 1등급은 특실정액, 2등급은 일반실정액, 자동차운임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말하며,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말함. 숙박비는 제1호 46,000원, 제2호는 4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현행 조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동안 관외 출장시 숙박비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개산급으로 지급받고, 교통비를 출장후 사후에 정산신청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 금번 신설되는 제5조 제1호는 출장여비를 정산처리하던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조례안 제5조 제3호, 제7호, 제8호의 개정되는 내용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4월 21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4. 질의답변 요지

“없 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